

고용창출장려금 부당이득 회수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

고용보험법 제20조, 제35조, 제10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에 의거 감원방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고용창출장려금(신중년적합직무 고용지원금) 부당이득 회수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서를 발송하였으나, 수취인불명,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합니다.

2022. 12. 30.

서울동부고용노동지청



- 건 명 : 고용창출장려금 부당이득 회수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공시송달
- 근 거 : 고용보험법 제20조, 제35조, 제10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
-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: 하단 참조

사업장명	사업장 관리번호	서류의 명칭	서류의 주요내용		송달불능 사유	주소
			회수금액	회수사유		
메인 모터스 (이○요)	102-02 -832**-0	고용창출장려금 부당이득 회수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요청	4,800,000원	감원방지 의무기간 미준수	수취인불명, 폐문부재	■ 서울 성동구 성수이로 22길 25 이하생략 (1회) ■ 서울 강북구 솔샘로 174 이하생략 (1회)

4. 공고기간 : 2022. 12. 30. ~ 2023. 1. 13. (15일간)

5. 기타사항은 서울동부지청 서울동부고용센터 기업지원팀 지희석(Tel 02-2142-8423)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